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98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98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512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경

변론 종결2022. 9. 1.

판결 선고2022. 10. 20.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512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주식회사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3.경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또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또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3.경 피고(2021. 3. 30. F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 등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제3채무자, 채권금액이 각 백지인 C의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였다.

1. 피고는 C에게 고로슬래그시멘트를 후불조건으로 공급한다.
2. C이 D조합에 가지고 있는 채권 총액 중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로슬래그시멘트 대금(VAT 포함) 전부를 D조합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C과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통지서 2부를 피고에게 제공키로 한다.
4. C은 D조합이 고로슬래그시멘트 납품대금 일체를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피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위와 같은 내용은 2017. 3. 1.자 판매분부터 적용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18. 8.경부터 C으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2018. 8. 3.자로 100,000,000원을, 2018. 9. 4.자로 100,000,000원을, 2018. 10. 1.자로 100,000,000원을, 2018. 10. 10.자로 300,000,000원을, 2018. 11. 30.자로 400,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C의 날인을 받은 후, C를 대리하여 D조합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7. C으로부터 'C은 2018. 9. 27. 원고로부터 336,000,000원을 차용하되, 2018. 10. 10.에 20,000,000원, 2018. 10.부터 2021. 4.까지 매월 25일에 10,000,000원, 2021. 5. 25.에 6,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97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C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에게 2016. 8. 16.경 40,075,000원 및 675,000원, 2016. 11. 21.경 40,000,000원, 2016. 12. 2.경

46,150,000원 등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2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던 사실, 그 결과 이 사건 합의일 무렵인 2017. 4. 25.경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360,000,000원 상당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에 대하여 3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관련 2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담보로 제공한 대상이 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은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영업을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등을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점, ② C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3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시멘트 등을 공급받아 오면서 2019년까지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총 4,654,551,664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 ③ C은 2017년경부터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되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시멘트 등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D조합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시멘트 등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이후인 2018년경 C에 대하여 역대 최고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1,722,177,115원 상당의 시멘트 등을 공급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19년경에도 1,173,177,115원 상당의 시멘트 등을 공급하였던 점, ⑤ C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등으로 2019년경까지 영업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고로부터 시멘트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D조합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서라도 피고로부터 시멘트 등을 공급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의 변제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박성윤

판사김유경

별지